

#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를 활용한 복수일자리 보유자 근로실태 분석\*

고 영 우\*\*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를 활용하여 복수의 일자리를 가진 근로자의 규모 및 근로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향후 복수 일자리 종사자의 고용보험 이종취득 및 부분실업급여 지급방안 등을 모색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이러한 제도변화를 논의하는데 있어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수 일자리를 보유한 취업자들의 근로실태를 다양하게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열악한 일자리일수록 다수의 일자리를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복수로 갖게 되는 일자리 역시 열악한 일자리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 바, 복수의 일자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많음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향후 복수 일자리 종사자의 고용보험 이종취득이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부분실업급여 지급방안 등 다양한 제도변화에 대한 논의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복수 일자리 종사자들이 더 이상은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세밀한 제도설계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1. 서론

시간제 근로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월 60시간(주당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초단시간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뿐만 아니라 적용제외 기준 이상으로 일하지만 복수의 일자리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피보험자격 이종취득 금지 조항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 문제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고용보험의 이종취득을 허용하는 문제는 이종취득자에 대한 부분급여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 과정에서 급여수급중의 취업 문제를 더불어 고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나아가, 이종취득을 허용할 때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초단시간 근로자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더불어 검토해야만 일관된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시간제 근로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방향도 고용률 제고를 위해 시간제

---

\* 본 연구는 2020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고용노동부의 의뢰를 받아 수행된 『복수 일자리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 및 실업급여 지급에 관한 연구』(고영우 외, 2020) 중 일부의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근로의 확산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정부는 시간선택제 근로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시간제 근로자들이 사회보험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2014년 10월 15일 발표된 정부의 「시간선택제일자리활성화후속·보완대책」에서는 복수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해 개인별 근로시간과 소득을 합산하여 사회보험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할 것이라고 천명하였으나, 여전히 제도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당연가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복수 일자리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을 일부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방향성이 천명되면서 소득기준 징수체계 일원화가 논의되고 있는 바, 복수 일자리 종사자의 고용보험 이중취득 문제가 현실화될 날도 멀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간제 근로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상에 맞추어, 향후에는 시간제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 현행 고용보험제도의 운영 실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복수 일자리 취업자의 근로실태를 기반으로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및 부분실업급여 지급방안 등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용보험 이중취득 및 부분실업급여 지급방안 등을 모색하기에 앞서 복수의 일자리를 가진 근로자의 규모 파악을 위한 통계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복수 일자리 보유자의 규모 및 근로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조사·제공하는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를 활용할 예정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복수 일자리 보유자들의 근로실태 및 고용보험 이중취득 논의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III장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의 직업력(job history) 자료를 활용하여 복수의 일자리에 종사하는 취업자의 근로실태를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IV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고 시사점을 도출함과 동시에, 후속 연구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 II. 선행 연구

박찬임 외(2017) 연구는 시간제 및 이중취득 관련 고용보험제도의 운영 실태 및 문제점을 제시하였고, 구직급여 수급 중 취업 인정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시간제 근로자는 2005년 104.4만 명에서 2015년 223.6만 명으로 10년간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고용보험제도의 가입 기준 및 급여지급에 대한 문제로 고용보험 이중취득의 제한과 월 60시간(주 15시간)미만의 적용이 제외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사업장 단위의 고용보험 적용, 적용 사업장 내 적용대상 근로자로 한 피보험자격 취득이라는 개념을 초단기간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종속 노동(특고 포함)”을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황덕순 외(2016)의 연구에서는 시간제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 당시 고용보험제도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복수 일자리 취업자의 근로실태를 분석하여 시간제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고용보험제도의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당시 고용보험제도는 복수의 사업장에서 일할 경우 피보험자

격의 이중취득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복수 일자리의 시간제 근로자는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복수 일자리 가운데 하나의 일자리가 실업된 경우 실업급여의 지급대상에 제외되고, 복수 일자리가 모두 실업된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적용된 일자리에 한하여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2015년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복수 일자리 보유자는 43만 명(임금근로자 27.8만 명, 비임금근로자 15.2만 명)이며, 2014년 노동패널 자료(17차)의 경우에는 복수 일자리를 가진 근로자가 24.8만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1.3% 수준임을 분석한 거의 유일한 연구이다.

박복순 외(2015) 연구에서는 2000년대 이후에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비정규직의 형태가 시간제 고용의 증가에 기여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회보장제도가 노동시장의 변화에 맞게 적절하게 변화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당시 고용보험제도에서 시간제 근로자는 피보험자 및 실업급여 자격 등을 충족하기 어려운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고, 고용불안정 및 저임금 등 취약계층임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임을 강조하였다.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21.6%(2015년 3월 기준)로 국민연금 가입률 16.2%, 건강보험 가입률 19.4%에 비해 높지만 전체 임금노동자 가입률(64%)에 비해 1/3 수준임을 보여주었다.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관련 외국사례와 관련하여, 네덜란드는 근로시간이나 소득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어 모든 시간제 근로자가 적용대상이고, 또한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도 1/2 이상 단축되면 실업으로 인정하므로 손실된 임금을 보완할 수 있음을 소개하였다. 아울러, 캐나다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보면 주당 일정 근로시간 또는 일정 소득이상일 것을 요구하여 시간제 근로자를 배제하였으나, 이를 폐지하면서 모든 시간제 근로자가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되었음을 소개하였다. 독일의 미니잡 근로자는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사용자 30%정도 일괄 비용을 납부함으로써 사회보험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은 증가한 반면 일자리의 질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부분실업급여제도는 실질적으로 수급자 수가 많지 않아 실효성의 문제가 대두되었음을 소개하였다. 미국의 실업급여제도는 각 주에서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상이하지만 2009년 경기부양법에 시간제 근로 규정 및 대안적 기준기간 등 실업급여요건을 명시하고 있어, 시간제 일자리만 희망하는 실업자라도 수급자격이 있음을 인정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음을 소개하였다.

안주엽 외(2014)는 시간선택제의 전환에 목적을 두고 주요 국가들의 시간제 및 시간제 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례들을 서술하였다. 이러한 해외의 주요 사례를 바탕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활용에 따르는 실노동비용은 낮추고 실제 가치분 근로소득은 높여 민간부문의 시간선택제 수요 및 공급을 증가시켜 이에 따른 세제 및 사회보험금 지원 방안과 시간선택제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및 부분실업급여 등의 제도 개선 방안 검토하였다. 국내에서 시간제 근로자가 확산되고 있지만 고용보험제도에서는 이중취득을 금지하고 있어 시간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지적함과 동시에, 해외의 주요 국가들은 월 소득 또는 주(월) 근로시간 등을 기준으로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 강제 사회보험에서 적용 제외하고 있음을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시간제 근로자가 고용보험 적용대상으로 포함되기 위해 고용보험자격 이중취득 제한을 폐지하여 실업수급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우선적이며, 급여액은 시간급으로 환산한 상한액과 하한액을 적용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안주엽 외(2014)의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를 이용하여 이중취득 허용에 따른 관련 정책대상자 규모를 추계하고 실업급여의 부분급여 제도 설계방안을 제시하였다.

### III. 복수 일자리 종사자의 근로실태 분석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조사·제공하는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를 활용하여 복수 일자리 종사자의 근로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KLIPS는 보유하고 있는 일자리 각각의 근로실태를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복수 일자리 종사자의 근로실태를 분석하기에 용이한 자료라 사료된다. 22차년도(2019년) 직업력 자료(학술대회용 버전)를 활용하여, 2019년에 보유한 일자리의 정보를 바탕으로 복수 일자리 규모 및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고용형태에 대한 부가조사가 이루어진 21차년도(2018년) 자료를 활용하여 2018년에 보유한 복수 일자리의 고용형태별 분포를 살펴보고자 한다.

2019년을 기준으로, 복수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전체 취업자 2,615만명 중 약 1.98% 정도에 해당하는 52만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일자리가 임금근로자인 1,970만명 중에서는 29만명(1.48%) 정도가 복수 일자리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된 일자리가 비임금근로자인 645만명 중에서는 약 3.5% 정도인 23만명이 복수 일자리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일자리를 포함하여, 최대 4개의 일자리를 복수로 보유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비중은 전체 취업자 대비 0.02%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 복수 일자리 종사자 규모

(단위: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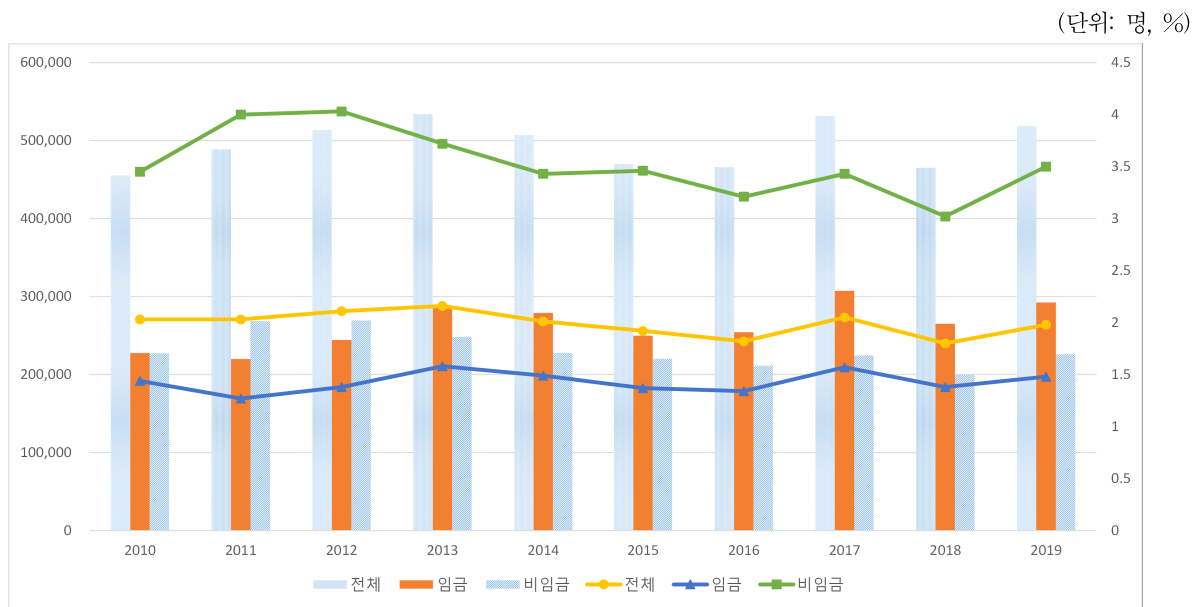
일자리 개수	전체 취업자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규모	비중
1	25,633	(98.02)	19,406	(98.52)	6,227	(96.50)
2	489	(1.87)	272	(1.38)	217	(3.36)
3	23	(0.09)	14	(0.07)	9	(0.14)
4	6	(0.02)	6	(0.03)	-	(-)
총 사람수	26,152	(100)	19,699	(100)	6,453	(100)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1~22차 학술대회용 자료, 2019년(22차) 기준.

아래 그림은 복수 일자리 종사자수 및 취업자 내 비중에 대한 지난 10년동안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 취업자 중에서는 약 1.8~2.2% 비중 수준에 해당하는 취업자가 복수 일자리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임금근로자에 대해서는 2019년 기준으로 3.5% 정도가 복수 일자리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까지 다소 감소하던 비중이 2019년에 다시 급격하게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복수 일자리에 종사하는 취업자 비중은 지난 10년동안 크게 변화가 없는 것

으로 보이나, 2019년에 반등이 있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최근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많아지고 있는 바, 향후 복수의 일자리를 보유한 취업자수 비중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 복수 일자리 종사자 비중 추이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1~22차 학술대회용 자료, 각 연도.

주된 일자리의 고용형태가 정규직인 취업자 중에서는 56.0%에 해당하는 4.3만명 정도가 정규직의 복수 일자리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일자리의 고용형태가 비정규직인 취업자 13.6만명 중에서는 무려 91.5%에 해당하는 12.5만명의 취업자가 비정규직 형태의 복수 일자리를 보유하고

<표 2> 복수 일자리의 고용형태(정규/비정규)별 분포

(단위: 천명, %)

		복수 일자리		
		정규직	비정규직	계
주된 일자리	정규직	43 (56.0)	34 (44.0)	77 (100)
	비정규직	12 (8.5)	125 (91.5)	136 (100)
	계	55 (25.7)	159 (74.3)	214 (100)

주: 1) 괄호() 안의 수치는 주된 일자리 고용형태별 복수 일자리 고용형태 비중(%)을 의미함.

2) 주된 일자리를 제외한 복수 일자리가 2개 이상일 경우, 주된 일자리에 대해 복수 일자리의 고용 형태는 중복 집계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1~22차 학술대회용 자료, 2019년(22차) 기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일자리 외 복수 일자리의 고용형태가 비정규직인 취업자는 전체 취업자의 74.3% 수준으로, 15.9만명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일자리 이외에 보유한 복수 일자리의 종사상지위를 살펴보면, 고용주 및 자영자 비중이 35.3% 수준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임시직이 25.9%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일자리의 종사상지위별로 살펴보면, 상용직 근로자 13.0만명 중에서는 53.4%에 해당하는 6.9만명이 상용직의 복수 일자리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임시직 14.6만명 중에서는 임시직의 복수 일자리를 보유한 취업자가 6.5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용직 및 고용주/자영자 그룹에서는 복수 일자리 비중이 고용주/자영자 형태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무급가족종사자는 복수 일자리도 무급가족종사자 형태로 다수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3> 복수 일자리의 종사상지위별 분포

(단위: 천명, %)

		복수 일자리					계
		상용	임시	일용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	
주된 일자리	상용	69 (53.4)	19 (14.6)	7 (5.8)	29 (22.4)	5 (3.9)	130 (100)
	임시	18 (12.0)	65 (44.8)	22 (14.8)	31 (21.0)	11 (7.4)	146 (100)
	일용	4 (11.1)	1 (3.7)	7 (18.7)	23 (57.9)	3 (8.6)	40 (100)
	고용주/ 자영자	17 (8.5)	47 (22.9)	24 (11.7)	107 (52.0)	10 (4.9)	206 (100)
	무급가족	0 (0)	10 (33.8)	2 (6.7)	4 (14.6)	13 (44.9)	29 (100)
	계	109 (19.7)	143 (25.9)	63 (11.4)	194 (35.3)	42 (7.7)	551 (100)

주: 1) 괄호() 안의 수치는 주된 일자리 종사상지위별 복수 일자리 종사상지위 비중(%)을 의미함.

2) 주된 일자리를 제외한 복수 일자리가 2개 이상일 경우, 주된 일자리에 대해 복수 일자리의 종사상지위는 중복 집계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1~22차 학술대회용 자료, 2019년(22차) 기준.

21차년도(2018년)에 조사된 고용형태 관련 부가조사 자료를 활용하면, 복수 일자리에 대한 고용형태를 새롭게 구분할 수 있다. 기존의 고용형태 구분(정규/비정규) 및 종사상지위로 새로워지는 일자리의 형태를 구분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개인사업자 여부, 근로자 고용방법, 가격결정방식, 근로형태 규제 여부, 임금결정방식 등 보다 엄밀한 기준을 바탕으로 고용형태를 구분할 경우,

과거 종사상 지위보다 명백한 기준에 의거한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가 구분된다. 새로운 고용형태 구분방식에 의하면, 명백한 임금근로자와 명백한 자영업자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집단이 분류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집단을 광의의 특수고용형태종사자라 구분하기로 한다. 보다 엄밀하게는 해당 집단도 다수의 고용형태로 구분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명백한 임금근로자, 명백한 자영업자, 광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3개의 고용형태로 구분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주된 일자리 외 복수 일자리는 66.9% 정도가 광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조사 연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앞서 종사상지위별 분석에서 고용주/자영자 비중이 가장 높았던 것과는 대비되는 결과로, 복수 일자리 중 명백한 자영업자의 비중이 5.7%에 불과하다는 점도 상당히 대비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주된 일자리의 고용형태와는 상관없이 복수 일자리는 광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비중이 상당히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등이 법제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이들에 대한 고용보호가 제한적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복수 일자리를 보유하고 있는 취업자 중 상당수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을 가능성이 높음을 유추할 수 있다.

<표 4> 복수 일자리의 고용형태별 분포(광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려)

(단위: 천명, %)

		복수 일자리			
		명백한 임금근로자	명백한 자영업자	광의의 특수고용	계
주된 일자리	명백한 임금근로자	67 (42.5)	6 (3.7)	84 (53.8)	157 (100)
	명백한 자영업자	15 (33.5)	10 (22.9)	20 (43.6)	45 (100)
	광의의 특수고용	33 (15.1)	8 (3.6)	175 (81.2)	216 (100)
	계	114 (27.4)	24 (5.7)	279 (66.9)	418 (100)

주: 1) 괄호() 안의 수치는 주된 일자리 고용형태별 복수 일자리 고용형태 비중(%)을 의미함.

2) 주된 일자리를 제외한 복수 일자리가 2개 이상일 경우, 주된 일자리에 대해 복수 일자리의 고용형태는 중복 집계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1~22차 학술대회용 자료, 2018년(21차) 기준.

주된 일자리와 복수 일자리를 근로시간 형태별로 살펴보면, 주된 일자리는 전일제 근로형태가 많은 반면, 복수 일자리는 시간제 근로형태가 다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 시간제 근로형태의 주된 일자리를 가진 취업자 7.7만명 중에서는 무려 73.8%에 해당하는 5.6만명의 취업자가 복수 일자리 역시 시간제 근로형태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일제 근로형태의 주된 일자리를 가진 취업자 11.9만명 중에서는 전일제 복수 일자리 보유자(7.3만명)가 시간제 복수 일자리 보유자(4.6만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복수 일자리의 근로시간 형태별 분포

(단위: 천명, %)

		복수 일자리		
		시간제	전일제	계
주된 일자리	시간제	56 (73.8)	20 (26.2)	77 (100)
	전일제	46 (38.8)	73 (61.2)	119 (100)
	계	103 (52.5)	93 (47.5)	195 (100)

주: 1) 괄호( ) 안의 수치는 주된 일자리 근로시간 형태별 복수 일자리 근로시간 형태 비중(%)을 의미함.

2) 주된 일자리를 제외한 복수 일자리가 2개 이상일 경우, 주된 일자리에 대해 복수 일자리의 근로시간 형태는 중복 집계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1~22차 학술대회용 자료, 2019년(22차) 기준.

주당 근로시간대별로 주된 일자리와 복수 일자리의 분포를 살펴보면, 우선 주된 일자리의 경우에는 주당 36시간 이상 근로하는 취업자가 28.8만명 수준으로 가장 많고,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초단시간 취업자는 5.4만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복수 일자리의 경우에는 시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는 15~36시간 미만 근로자가 23.5만명(42.4%)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취업자가 16.1만명(29.1%) 수준으로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주된 일자리가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일자리일 경우에 복수로 보유한 일자리 역시 주당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일자

<표 6> 복수 일자리의 주당 근로시간별 분포

(단위: 천명, %)

		복수 일자리			
		15시간 미만	15시간 이상 36시간 미만	36시간 이상	계
주된 일자리	15시간 미만	31 (56.8)	18 (33.7)	5 (9.5)	54 (100)
	15시간 이상 36시간 미만	60 (28.3)	118 (56.2)	33 (15.5)	211 (100)
	36시간 이상	67 (23.3)	98 (34)	123 (42.7)	288 (100)
	계	157 (28.5)	235 (42.4)	161 (29.1)	553 (100)

주: 1) 괄호( ) 안의 수치는 주된 일자리 주당 근로시간별 복수 일자리 주당 근로시간 비중(%)을 의미함.

2) 주된 일자리를 제외한 복수 일자리가 2개 이상일 경우, 주된 일자리에 대해 복수 일자리의 근로시간 집단은 중복 집계함.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1~22차 학술대회용 자료, 2019년(22차) 기준.



리인 비중이 56.8%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근로시간이 짧은 복수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를 활용하여 복수의 일자리를 가진 근로자의 규모 및 근로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향후 복수 일자리 종사자의 고용보험 이종취득 및 부분실업급여 지급방안 등을 모색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이러한 제도변화를 논의하는데 있어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19년을 기준으로, 전체 취업자 중 약 1.98% 정도의 취업자가 복수의 일자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일자리가 임금근로자인 취업자 중에서는 복수 일자리 보유자가 1.48% 수준으로 다소 적은 반면, 주된 일자리가 비임금근로자인 취업자 중에서는 무려 3.5% 정도의 근로자가 복수 일자리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복수 일자리에 종사하는 취업자 비중은 지난 10년동안 크게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9년에 반등이 있었기 때문에 향후 그 추이를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최근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많아지고 있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인 바, 향후 복수의 일자리를 보유한 취업자수 비중 및 근로실태 등은 지속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복수 일자리를 보유한 취업자들의 근로실태를 다양하게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열악한 일자리일수록 다수의 일자리를 보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복수로 갖게 되는 일자리 역시 열악한 일자리가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시 말해서, 주된 일자리가 안정적이지 못하여 복수의 일자리를 갖게 되는 것인데, 추가로 보유하게 되는 일자리 역시 안정적이지 못한 일자리가 많은 바, 이러한 개인은 여전히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많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최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당연가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복수 일자리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을 일부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방향성이 천명되면서 소득기준 정수체계 일원화가 논의되고 있는 바, 복수 일자리 종사자의 고용보험 이종취득이 현실화되는 것에 발맞추어 부분실업급여 지급방안 등 다양한 제도변화에 대한 논의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일자리만을 다수 보유하게 되는 복수 일자리 종사자들이 더 이상은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세밀한 제도설계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 참고 문헌

- 박복순·송호진·구미영·김수완·유혜경(2015),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Ⅲ):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 관련 외국입법례 및 시사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박찬임·전형배·박혁(2017), 『고용보험 가입기준 개선방안 및 피보험자격 이중취득과 실업급여 수급자의 소득활동 인정방안』, 고용노동부.
- 안주엽·황덕순·김기선(2014), 『시간선택제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방안 연구』, 고용노동부.
- 황덕순·이병희·박혁·신수정·송지원·오민애·이승현·한주희(2016),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에 따른 고용보험 사업 적용방안 연구』, 고용노동부.